

제5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5. 9. 24.(목) 09:05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허원제 부위원장
김재홍 상임위원
이기주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서면회의 결과 확인

○ 제50차 서면회의 결과 <의결안건> 2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보고함

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

○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⑥ 의결사항

가. 오비에스경인티브이(주)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(2015-51-225)

- 방송통신위원회가 증자와 관련하여 부과한 시정명령('15.2.6.)을 이행하지 않은 오비에스경인티브이(주)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전영만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의한 결과,
- 방송법 제18조(허가·승인·등록의 취소등)제1항제9호, 제19조(과징금 처분)제1항, 제109조(과징금 부과 및 징수), 동법 시행령 제70조(과징금 부과기준)에 따라 오비에스경인티브이(주)에 대해 5,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오비에스경인티브이(주)의 재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 (2015-51-226)

-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오비에스경인티브이(주)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전영만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의한 결과,
- 방송법 제99조(시정명령등)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명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함

- 다 음 -

- '13년 재허가 조건에 따른 '14년 상반기 증자계획중 증자 미이행 금액(39.5억원)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며, 그 이행실적을 이행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
- 다만, 증자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에 상응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증자이행 기한일 도래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
- '13년 재허가 조건에 따른 '14년 방송프로그램 제작투자비중 미이행 금액(8억원)을 '15년~'16년 제작투자비와 함께 '16년말까지 집행하여야 하며, 그 이행실적을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 결산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
- 다만, 미이행 금액을 '16년에 집행할 경우에는 제작비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(1.57%)에 해당되는 금액(1,200만원)을 가산하여 집행할 것
- '15년말부터 적정 현금보유액은 '13년 재허가시 제출한 '14년말 현금보유액(87억원)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, 그 이행실적을 '15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

다. 방송사업자 재허가·승인 기본계획 수정에 관한 건(2015-51-218~227)

- 제18차 위원회('15.4.29.)에서 심의·의결한 '방송사업자 재허가·승인 사전 기본계획' 중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 전영만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심의한 결과
 -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조건부 재허가(재승인)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7. 보고사항

가. 「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(고시)」 일부 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제40차 위원회('15.8.6.)에 보고된 「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(안)」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요금내역·해지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및 과도한 할인율 격차 방지 등 공정경쟁 촉진 등을 담은 「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(고시)」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
 - 행정예고, 규제심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함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의2(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)제3항 위반시 과태료가 상향(1천만원 이하 → 3천만원 이하)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고 과징금 관련 용어를 타법령과 동일하게 하기 위한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,
 - 입법예고, 규제심사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함

6. 폐 회 (10:45)